

조합기(組合機) 청소작업 중 협착

양모와 화학섬유를 조합하는 조합기(카드기) 가동 중 방호덮개를 열고 롤러에 끼인 섬유를 갈퀴 등으로 제거하다가 회전하는 롤러의 돌기부분에 옷소매가 걸려 팔이 협착되어 사망



발생 원인

- 조합기(롤러) 가동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실시
 - 롤러가 맞물려 회전하는 상태에서 갈퀴 등으로 섬유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
- 부적합한 작업복 착용
 - 롤러의 돌기부분에 걸릴 위험이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함

TIP

안전작업

- 1 청소 등의 작업 시 기계 운전을 정지
 - 기계를 점검, 보수하거나 청소작업 시 운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작업 실시
 - 방호덮개에 연동장치 설치
- 2 단정한 복장 착용
 - 소매, 상의 등 롤러의 돌기부분 등에 말려들 위험이 없는 안전한 복장 착용



점검중 표지판



단정한 복장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(작업모 등의 착용) 등



조합기(組合機) 청소작업 중 협착

기계를 청소할 때는 전원을 꺼주세요!

